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나7841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나7841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9 선고 2021가단512286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규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소희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경식

변론종결 2022. 6. 10.

판결선고 2022. 7. 8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9. 선고 2021가단5122864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C 사이의 ① 2019. 10. 1. 체결된 5,000,000원의 증여계약, ② 2019. 10. 24. 체결된 5,000,000원의 증여계약, ③ 2019. 10. 25. 체결된 3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각각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,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, 아래에서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① 원고는 ‘임차보증금 950,000,000원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,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.’는 C의 말을 믿고 합계 390,000,000원을 대여하였으나, 실제로는 그 임차보증금이 50,000,000원에 불과하였고, 위와 같은 C의 기망으로 위 대여가 이루어진 점, ② C은 위 대여금을 연장된 변제기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390,000,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, 이후 원고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, 그 무렵 C은 임대인인 D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으로 실제 임차보증금 50,000,000원 중 43,800,000원을 반환받았는데, 그중 40,000,000원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던 점, ③ 한편 D은 관련

소송[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9273)]에서 나머지 3,800,000원을 2019. 11. 11.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, 아무런 증빙 없이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거나, 임차목적물을 반환받기도 전에 임차보증금 전부를 반환했다는 것은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, D이 C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한편 C의 위와 같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었지만,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 당시 C으로부터 40,000,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90,000,000원의 대여가 원고 주장과 같은 C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,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, 2,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, 원고가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이 있었고, 이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 또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또한 위 관련 소송에서 임대인 D이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이 C의 어떠한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. 나아가 D이 실제 임차보증금 50,000,000원 중 40,000,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 이후의 피고와 C 사이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, 그 주장과 같은 각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양훈, 판사 윤웅기, 판사 양은상